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제안연월일: 2024. 12. .

번호 | 0950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4.6.2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2201172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8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황희의원 등 11인	'24.8.1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국민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2202908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법률안	2203381	임오경의원 등 10인	'24.8.2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2203405	임오경의원 등 10인	'24.8.3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2203474	임오경의원 등 10인	'24.9.2.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2203934	진종오의원 등 11인	'24.9.1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2204248 신동욱의원 등 12인 '24.9.2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24.9.24.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는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시정명령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마케팅업·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융자, 펀드)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 칭을 변경하며, 현장점검 또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를 명시함(안 제2조제11호의3, 제18조의2, 제18조의16).
- 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8조의9).
-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 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2항·제 3항 및 제22조).
- 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 발생 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 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을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다음"으로, "그"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융자받은"을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

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기관·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4호 중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 다.
-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9의 제목 중 "징계요구"를 "징계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인권침해에 대하여"를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로,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을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요구를"을 "조치요구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을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을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라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 요구"를 "조치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

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2. 혐의자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2. 경징계 : 감봉, 견책
-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신청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

- 항) 중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실태조사의 방법·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 성·관리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를 "제17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제3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재징계요구에 관한 부분, 제18조의9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전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종전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종전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스포 츠윤리센터가 이 법 시행 이전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제18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 리센터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등(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에 따 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수탁사업 자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없이 해당 사무를 수탁사업자에 인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
	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
	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
	직원 등 간 발생하는 인권침
	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
	<u>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u>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u>말한다.</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	
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	
수 업체를 <u>지정하여 서울올림</u>	<u>지정할 수 있다</u> .
<u>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u>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	
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 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 <u>나 제공하</u>는 업
- 4. (생략)
- ④ ~ ⑥ (생 략)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3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u>국민</u>
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
계정에서 그
<u>이 경우 각 호</u>
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
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
<u> </u>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u>하는 업</u>
 -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하는 업
 - 4. (현행과 같음)
 - ④ ~ ⑥ (현행과 같음)
 - (7) -----

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 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 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 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

⑧ (현행과 같음)

시책의 마련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 에 따른 위탁기관 · 단체의 장 을 포함한다)은 통합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저립) ①·② (생 략)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 3. (생략)
-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 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 검할 수 있는 <u>인권감시관</u> 운 영
- 5. ~ 7. (생 략)
- ④ ~ ⑧ (생 략)
-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② (생 략)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 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u>인권보호관</u>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된다. <단서 신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 략)

<신 설>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 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 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할 수 있다.

-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자에 대한 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징계 요구</u>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u>할</u> 조치요
<u>구를</u>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 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 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 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4)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 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 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 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 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 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 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 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

<신 설>

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수 있다.

-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2.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 ⑥ 제2항에 따른 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할 수 있다.
- 1. 중징계 :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
 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u><신 설></u>

<신 설>

2. 경징계 : 감봉, 견책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
4제1항에 따라 신고접수된 사
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
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
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 (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 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

<신 설>

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신청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 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 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 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신 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 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 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 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 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 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5. (생략)
 -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

2	문화	체도	우관?	망투	- 장관	은	실

- 태 조사들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 계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6호

<u>까지의</u> 규정에 따른 출자 등 <u>까지의</u> ---에 따른 수익금 ------

7. · 8. (생략)

② ~ ④ (생 략)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기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6. (생략)
 - 7. <u>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u> 따 른 자금의 융자
 - 8. ~ 12. (생략)
 - ②·③ (생 략)
 -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 정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 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 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

<u>717171</u>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1. ~ 6. (현행과 같음)
7. <u>제17조제3항에</u>
8. ~ 12. (현행과 같음)
8.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 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 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u>6.</u> (생 략) ② ~ ④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권 발행 사업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_ ② ~ ④ (현행과 같음)